

의안번호	제 511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1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 주요 관광자원을 개발·홍보하고, 최근의 소규모·개별 관광객 여행 트렌드에 맞추어 차별화된 전략 관광상품 개발과 선제적인 마케팅 추진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따라, 도 차원에서는 관광홍보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고,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의 실행적인 기능은 전문성과 능률성, 신뢰성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단순 사실 행위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관광홍보·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민간 위탁 대상사무로 선정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기간 : 2017. 1 ~ 12월

나. 위탁사무

- ①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추진(전문성)
- ②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사업 운영(전문성)
- ③ 청주공항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(단순사실행위)
- ④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운영(전문성)

다. 소요예산 : 2,632백만원 * '17년도 당초예산안 반영 계획

- ①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추진 : 1,000백만원
- ②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사업 운영 : 421백만원
※ 관광설명회(마케팅), 명예기자운영, 워크숍, 세미나, 축제아카데미, 홍보관, 공동사업
- ③ 청주공항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: 800백만원
- ④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운영 : 411백만원

라. 수탁기관 : 관광관련 법인 및 단체(기관)

마. 위탁방법 : 공개모집 후 위·수탁협약에 의함

바. 수탁기관 선정 :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

사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」 제8조(관광업무의 위탁), 제9조(대상업무)

아. 2016년도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①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추진 : 1,000백만원 /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
- ②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사업 운영 : 281백만원 / 충청북도
관광협회, 충북연구원
- ③ 청주공항활성화 등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운영 : 740백만원 /
충청북도관광협회
- ④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운영 : 418백만원 /
충청북도관광협회, 충북대학교

자. 기 동의 민간위탁사업 현황('16. 1회추경시)

- ① 국내외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: 50백만원/충청북도관광협회
- ② 체류형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: 30백만원/코레일
- ③ 중국인 유학생 충북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: 40백만원/충청북도관광협회

차. 향후 추진계획

-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: 2016년 12월
-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: 2017년 2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《 지방자치법 》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《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》

- 제8조(관광업무의 위탁)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9조(대상업무)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충청북도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
 2. 국내·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
 3. 국내·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

4. 관광기념품 공모전
5. 순환관광버스 운영
6. 문화관광해설사, 관광안내원 등 관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
7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《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》

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당초예산 반영 필요

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